

#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

2016. 04

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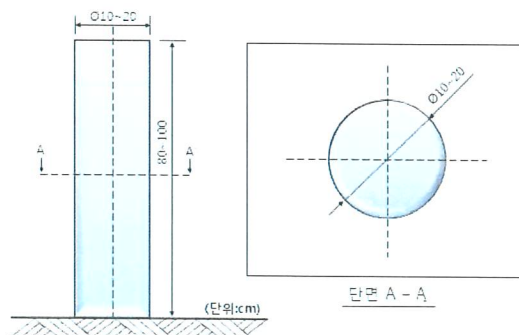
#### 4) 진입방지시설(bollard)

##### (1) 설치장소

- 블라드는 자전거도로 시점부, 종점부 등에 설치할 수 있다.
-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방지시설(bollard)을 설치한다.
- 블라드는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,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## (2) 설치기준

- 블라드는 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개소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블라드의 간격은 1.5m 내외로 하고, 점형블록과 30cm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점자블록과 동선상 충돌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블라드 전면 30cm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인지 할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1장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블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블라드의 높이는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.8~1.0m 내외로 하고, 그 지름은 0.1~0.2m 내외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블라드의 재질은 보행자,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을 완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,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

<그림 7 - 6> 진입방지시설(bollard)의 높이 및 지름